##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77

발의연월일: 2020. 10. 27.

발 의 자 : 남인순 · 강선우 · 신정훈

오영환 · 이성만 · 이용빈

전혜숙 · 최혜영 · 허종식

홍성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을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리양육 가정 중에서 위탁가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위탁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리양육이 아닌가정위탁으로 구분하고, 위탁가정의 요건과 무관하게 별도의 지원을받지 않고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으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인천 초등생 화재사건으로 드러난 학대 피해아동이나 2 세 이하 아동 등 정서적 지원, 치료적 접근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보호 가 필요한 아동을 고려한 다양한 가정위탁유형을 하위법령에 규정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가정위탁의 유형(전문, 일반 등)을 구분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9조제2호 및 제61조).

####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 내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제59조제2호 중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을 "가정위탁"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를 "아동복지단체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경우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제15조(보호조치) ①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	
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	2. <u>「민법」 제777</u> 조제1호 및
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
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는 사람의 가정 내에서 보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u>는 것</u>	<u>것</u>
3. <u>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u>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
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
	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	제59조(비용 보조)
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생략)
- 2. 보호대상아동의 <u>대리양육이</u><u>나 가정위탁</u> 보호에 따른 비용

3. ~ 8. (생략)

1. ~ 5. (생략)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 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 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u>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u> 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